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5. 27 선고 2021가단1058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정미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. 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990,18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,990,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주식회사는 2010. 9. 27. C에게 6,000,000원을 이자율 연 24.9%, 지연배상금율 연 34.9%로 정하여 대출하였다. 그 후 D 주식회사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.

나. E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2015. 4. 30. 'C은 E 주식회사에게 4,171,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7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5. 9. 3.

확정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0420 양수금 사건). 그 후 E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주식회사 F, 주식회사 G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.

다. 한편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순번 1 부동산을 '이 사건 토지', 순번 2 부동산을 '이 사건 건물'이라 하고, 이를 합하여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순번	부동산	소유권 등기 내역 (등기일자 / 소유자)	등기원인
1	토지	1991. 6. 25. H (피고의 부)	1991. 6. 17. 매매
		2010. 2. 19. I (피고의 모)	2010. 2. 18. 증여
		2020. 2. 13. 피고	2020. 1. 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
2	건물	1994. 9. 23. 피고	(보존등기)
		2004. 9. 14. I	2004. 9. 13. 증여
		2020. 2. 13. 피고	2020. 1. 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

라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I는 2020. 1. 3. 사망하였다. 그 상속인으로는 C, 피고를 포함한 7인의 자녀가 있다. 피고는 2020. 1. 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0. 2. 1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9. 1. 7.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(근저당권자 J조합, 채권최고액 2,800만원, 채무자 H)는 2013. 1. 7.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I로

변경되었다가 2020. 2. 13.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바.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다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(1/7)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인 2022. 1. 21. 기준 합계 9,990,18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분인 1/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,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/7 지분 평가액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1/7 지분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3. 판 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이 있고,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므로,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

1)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상속인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게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, C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피고의 악의 여부

1) 관련 법리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47996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과 함께 갑 제6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피고는 C의 상속지분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이 사건 협의를 한

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있고,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.

가)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가 1994년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나, 2004년경 H(피고의 부), I(피고의 모)의 부탁으로 I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.

나)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1999. 1. 7. 채권자 J조합, 채무자 H, 채권최고액 28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(2013. 1. 7. 채무자가 I로 변경됨)

다) 피고는 2003. 1. 17. 당시 생존 중이던 H으로부터 J조합 채무를 상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K(H의 둘째 사위)에게 11,000,000원을 송금하여 그 돈으로 2003. 1. 18. J조합 채무 중 10,000,000원을 변제하게 하고, 1,000,000원은 H의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.

라) 피고는 2013. 4.경부터 2020. 1.경까지 I에게 J조합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도록 합계 6,506,586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0. 2. 4.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,226,475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.

마) I의 상속인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자녀들은 피고가 모친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거나 부모님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부모님 생전에 안락한 삶을 유지하시도록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.

4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정아

별지